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(박상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 박상구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
박순규, 성흠제, 송명화,
송정빈, 양민규, 장상기,
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
한기영, 황규복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“지역건설산업”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, 이를 규제 혁신 차원에서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까지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산업을 지역건설산업에 포함함 (안 제1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 지역 내에서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 지역 내에서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